■ 화장품법 시행규칙 [별표 7] <개정 2023. 6. 22.>

행정처분의 기준(제29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에 나머지 각각의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며,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.
-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와 품목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업무정지 기간보다 길거나 같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, 업무정지 기간이 품목업무정지 기간보다 짧을 때에는 업무정지처분과 품목업무정지처분을 병과(倂科)한다.
- 다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(제2호머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)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준의 적용일은 최근에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날(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에 과징금처분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)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, 품목업무정지의 경우 품목이다를 때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.
- 라. 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마.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진행 중인 사항의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씩을 더하여 처분한다. 이 경우 그 최대기간은 12개월로 한다.
- 바.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가 3차 이상인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.
- 사. 화장품제조업자가 등록한 소재지에 그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 한다.
- 아. 영 제2조제2호라목의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"판매금지"는 "수입대행금지"로, "판매업무정지"는 "수입대행업무정지"로 본다.
- 자.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 제할 수 있다.
 - 1)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경우
 - 가) 국민보건, 수요·공급,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
 - 나)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 - 다) 광고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광고회사 또는 광고매체에서 무단 광고한 경우
 - 2) 처분을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는 경우
 - 가) 기능성화장품으로서 그 효능·효과를 나타내는 원료의 함량 미달의 원인이

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 등으로 인한 성분의 변화 때문이라고 인정된 경우나) 비병원성 일반세균에 오염된 경우로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가 없으며, 유통 중 보관상태 불량에 의한 오염으로 인정된 경우

2. 개별기준

이 비 내 의	관련	처분기준				
위반 내용	법조문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	
가.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 는 화장품책임판매업 의 다음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						
1) 화장품제조업자·화장 품책임판매업자(법인 인 경우 대표자)의 변 경 또는 그 상호(법인 인 경우 법인의 명칭) 의 변경		시정명령	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5일	·	제조 또는 판매업무정 지 1개월	
2)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		제조업무정 지 1개월	제조업무 정지 3개 월	제조업무 정지 6개 월	등록취소	
3) 화장품책임판매업소의 소재지 변경		판매업무정지 1개월	판 매 업 무 정지 3개 월		등록취소	
4) 책임판매관리자의 변 경		시정명령	판 매 업 무 정지 7일	판 매 업 무 정지 15일	판매업무정 지 1개월	
5) 제조 유형 변경		제조업무정 지 1개월		제조업무 정지 3개 월	제조업무정 지 6개월	
6) 영 제2조제2호가목부 터 다목까지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한 자의 책임판매 유형 변경		경고	판 매 업 무 정지 15일	판 매 업 무 정지 1개 월	판매업무정 지 3개월	
7) 영 제2조제2호라목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 록한 자의 책임판매		수입대행업 무정지 1개 월		수 입 대 행 업무정지 3개월	수입대행업 무정지 6개 월	

나. 거짓이나 그 밖의 부	법 제24조	등록 취소	,		
정한 방법으로 법 제3 조제1항 또는 법 제3 조의2제1항에 따른 등 록・변경등록 또는 신 고・변경신고를 한 경	제 1 항 제 1				
우 다.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 우					
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 또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의 전부가 없는 경우 		제조업무정 지 3개월	제조업무 정지 6개 월	등록취소	
2) 제6조제1항에 따른작업소, 보관소 또는시험실 중 어느 하나가 없는 경우		개수명령	제 조 업 무 정지 1개 월		제조업무정 지 4개월
3) 제6조제1항에 따른 해당 품목의 제조 또 는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중 일부 가 없는 경우		개수명령	제조업무		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지 4개월
4)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장품을 제조하 기 위한 작업소의 기 준을 위반한 경우					
가) 제6조제1항제1호 가목을 위반한 경우		시정명령		제 조 업 무 정지 2개 월	제조업무 정 지 4개월
나) 제6조제1항제1호나 목 또는 다목을 위 반한 경우		개수명령		제조업무	해당 품목 제조업무정 지 4개월
라. 법 제3조의2제1항 후 단에 따른 맞춤형화장					

품판매업의 변경신고 를 하지 않은 경우	세2오의2 				
1)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시정명령	판매업무 정지 5일	판매업무 정지 15일	판매업무정 지 1개월
2)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소 상호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시정명령	판매업무 정지 5일	판매업무 정지 15일	판매업무정 지 1개월
3)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판매업무정 지 1개월	판매업무 정지 2개월	판매업무 정지 3개월	판매업무정 지 4개월
4) 맞춤형화장품조제관 리사의 변경신고를 하 지 않은 경우		시정명령	판매업무 정지 5일	판매업무 정지 15일	판매업무정 지 1개월
마.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자가 법 제3조의2제2 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않게 된 경우	제 1 항 제 2	시정명령	판매업무 정지 1개월	판매업무 정지 3개월	영업소 폐쇄
바. 법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등록취소			
사.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 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 는 화장품을 제조·수입 한 경우	제 1 항 제 4		판매업무	판매업무	등록취소
아. 법 제4조제1항을 위반 하여 심사를 받지 않거 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	제 1 항 제 5				
1) 심사를 받지 않은 기 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		판매업무정 지 6개월	판 매 업 무 정지 12개 월	등록취소	

2) 보고하지 않은 기능		판매업무정	판매업무	판매업무	판매업무
성화장품을 판매한 경 우		지 3개월	정지 6개 월	정지 9개 월	지 12개월
자. 법 제4조의2제1항에	법 제24조	판매 또는	판매 또는	판매 또는	판매 5
따른 제품별 안전성 자	제1항제5호	해당 품목	해당 품목	해당 품목	해당 품독
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	의2	판 매 업 무	판 매 업 무	판매업무	매업무 >
지 않은 경우		정지 1개월	정지 3개월	정지 6개월	12개월
차. 법 제5조를 위반하여	법 제24조				
영업자의 준수사항을	제1항				
이행하지 않은 경우	제6호				
1) 제11조제1항제1호의		시정명령	제조 또는	제조 또는	제조 또는
준수사항을 이행하지			해당품목	해당품목	당품목 저
않은 경우			제조업무	제조업무	업무정지
			정지 15일	정지 1개	개월
				월	
2) 제11조제1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			
가) 제조관리기준서,		제조 또는	제조 또는	제조 또는	제조 또
제품표준서, 제조관		해당 품목	해당 품목	해당 품목	해당 품
리기록서 및 품질관		제조업무정	제조업무	제조업무	제조업무
리기록서를 갖추어		지 1개월	정지	정지	지 9개원
두지 않거나 이를 거 짓으로 작성한 경우			3개월	6개월	
나) 작성된 제조관리		제조 또는	제조 또는	제조 또는	제조 또
기준서의 내용을 준		해당 품목	해당 품목	해당 품목	해당 품
수하지 않은 경우		제조업무정	제조업무	제조업무	제조업무
		지	정지	정지	지 6개위
		15일	1개월	3개월	
3) 제11조제1항제3호부		제조 또는	제조 또는		
터 제5호까지의 준수		해당 품목	해당 품목		
사항을 이행하지 않은		제조업무정			제조업무
경우		지 15일	정지 1개월	정지 3개월	지 6개역
4) 제11조제1항제6호부		제조 또는	제조 또는		제조 또
터 제8호까지의 준수		해당 품목	해당 품목		
사항을 이행하지 않은		제조업무정		제조업무	제조업무

경우	지 15일	정지 1개월	정지 3개월	지 6개월
5) 제12조제1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		
가) 별표 1에 따라 책 임판매관리자를 두 지 않은 경우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2개월
나) 별표 1에 따른 품질 관리 업무 절차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 짓으로 작성한 경우	판매업무 정지 3개월	판매업무 정지 6개월	판매업무 정지 12개월	등록취소
다) 별표 1에 따라 작성 된 품질관리 업무 절차서의 내용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2개월
라) 그 밖에 별표 1에 따른 품질관리기준 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시정명령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7일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
6) 제12조제2호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			
가) 별표 2에 따라 책임 판매관리자를 두지 않은 경우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6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2개월
나) 별표 2에 따른 안전 관리 정보를 검토하 지 않거나 안전확보 조치를 하지 않은 경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2개월

<u> </u>		3개월	6개월	
다)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을 준 수하지 않은 경우	경고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	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² 지 6개월
7) 그 밖에 제12조제3호 부터 제11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시정명령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부 판매업무 지 6개월
8) 법 제5조제3항을 위반 하여 소비자에게 유통 •판매되는 화장품을 임의로 혼합・소분한 경우	판매업무정 지 15일	판매업무 정지 1개월	판매업무 정지 3개월	판매업무 지 6개월
9) 제12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5일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	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	판매 또는 해당 품! 판매업무 지 6개월
10) 제12조의2제3호의준수사항을 이행하지않은 경우	시정명령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	판매 또는 해당 품부 판매업무 지 6개월
11) 제12조의2제4호의준수사항을 이행하지않은 경우	시정명령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7일	_ ,	판매 또는 해당 품부 판매업무 지 1개월
12) 제12조의2제5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시정명령	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	_ ,	판매 또는 해당 품부 판매업무 지 6개월

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 장품을 회수하지 않거 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의2	제 조 업 무 정지 1개월			
타. 법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보고한 경우	제 1 항 제 6	제 조 업 무	제조업무	제조업무	등록취2
파. 법 제9조에 따른 화장 품의 안전용기·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 우	제 1 항 제 8			판매업무	
하. 법 제10조 및 이 규칙 제19조에 따른 화장품 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의 기재·표시사항 을 위반한 경우	제 1 항 제 9				
1) 법 제10조제1항 및 제 2항의 기재사항(가격 은 제외한다)의 전부 를 기재하지 않은 경 우		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3개월		판매업무	
2)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재사항(가격은 제외한다)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		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개월	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 월	판매업무	, -
3) 법 제10조제1항 및 제 2항의 기재사항(가격 은 제외한다)의 일부 를 기재하지 않은 경 우		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5일	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 월	판매업무	
거. 법 제10조, 이 규칙 제 19조제6항 및 별표 4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표 시기준 및 표시방법을	제24조제1	해당 품목 판매업무정 지 15일	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 월	판매업무	

나 바 케이코 미 시 그리	H) 케이/코	케다 프ㅁ	케다 포모	케다 포모	케다 포다
너. 법 제12조 및 이 규칙 제21조에 따른 화장품 포장의 기재·표시상의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 우	제 1 항 제 9			판매업무	
더.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·광고한 경우					
1) 별표 5 제2호가목·나 목 및 카목에 따른 화 장품의 표시·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 우		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3개월 (표시위반) 또는 해당 품목 광고 업무정지 3 개월(광고 위반)	판 매 업 무 정지 6개 월(표시위 반) 또는 해당 품목 광 고 업 무	판매업무 정지 9개 월(표시위 반)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9개	
2) 별표 5 제2호다목부 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· 광고 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		또는 해당 품목 광고	판 매 업 무 정지 4개 월(표시위 반) 또는 해당 품목 광 고 업 무 정지 4개	판 매 업 무 정지6개월 (표 시 위 반) 또는 해당 품목 광 고 업 무	판매업무정 지 12개월 (표시위반) 또는 해당 품목 광고업 무정지 12개 월(광고위
러. 법 제14조제4항에 따 른 중지명령을 위반하 여 화장품을 표시·광 고를 한 경우 머. 법 제15조를 위반하여	제1항제10호		판매업무	판매업무	
다음의 화장품을 판매 하거나 판매의 목적으 로 제조·수입·보관 또	제1항제11				

는 진열한 경우	
1) 전부 또는 일부가 변	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
패(變敗)되거나 이물	제조 또는 제조 또는 제조 또는 제조 또는
질이 혼입 또는 부착	판 매 업 무 판매 업무 판매업무 정
된 화장품	정지 1개월 정지 3개 정지 6개 지 12개월
	월 월
2) 병원미생물에 오염된	해당 품목 해당품목 해당품목 해당 품목제
화장품	제조 또는 제조 또는 제조 또는 조 또는 판
	판 매 업 무 판 매 업 무 판 매 업 무 매업무 정지
	정지 3개월 정지 6개 정지 9개 12개월
	월 월
3) 법 제8조제1항에 따	제조 또는 제조 또는 제조 또는 등록취소
라 식품의약품안전처	판 매 업 무 판 매 업 무
장이 고시한 화장품의	정지 3개월 정지 6개 정지 12개
제조 등에 사용할 수	월 월
없는 원료를 사용한	
화장품	
4) 법 제8조제2항에 따	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
라 사용상의 제한이	제조 또는 제조 또는 제조 또는 제조 또는
필요한 원료에 대하여	판 매 업 무 판 매 업 무 판 매 업 무 판 매 업무 정
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	정지 3개월 정지 6개 정지 9개 지 12개월
고시한 사용기준을 위	월 월
반한 화장품	
5) 법 제8조제8항에 따	
라 식품의약품안전처	
장이 고시한 유통화장	
품 안전관리기준에 적	
합하지 않은 화장품	
가) 실제 내용량이 표	
시된 내용량의 97퍼	
센트 미만인 화장품	
(1) 실제 내용량이 표	시정명령 해당 품목 해당 품목 해당 품목
시된 내용량의 90퍼	제조 또는 제조 또는 제조 또는
센트 이상 97퍼센트	판매업무 판매업무 판매업무 정
미만인 화장품	정지 15일 정지 1개 지 2개월
	월

- (2)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
- (3)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내용량의 80퍼센트 미만인 화장품
- 나) 기능성화장품에서 기능성을 나타나게 하는 주원료의 함량 이 기준치보다 부족 한 경우
- (1)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 트 미만 부족한 경 우
- (2) 주원료의 함량이 기준치보다 10퍼센트이상 부족한 경우
- 다) 그 밖의 기준에 적 합하지 않은 화장품
- 6)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(병행 표 기된 제조연월일을 포 함한다)을 위조·변조 한 화장품
- 7) 그 밖에 법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화장품

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
제조	또는	제조	또는	제조	또는	제조	또는
판 매	업 무	판 매	업 무	판 매	업 무	판매업	무 정
정지	1개월	정지	2개	정지	3개	지 4개	월
		월		월			
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
제조	또는	제조	또는	제조	또는	제조	또는
판 매	업 무	판 매	업 무	판 매	업 무	판매업	무 정
정지	2개월	정지	3개	정지	4개	지 6개	월
		월		월			
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
제조			또는			제조	
판 매						판매입	
정지						지 6개	
		월		월			
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
제조						제조	
판 매	업 무	판 매	업 무	판 매	업 무	판매일	립무정
정지	1개월	정지	3개	정지	6개	지 127	개월
		월		월			
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
제조	또는	제조	또는	제조	또는	제조	또는
판 매	업 무	판 매	업무	판 매	업 무	판매업	무 정
정지	1개월	정지	3개	정지	6개	지 127	개월
		월		월			
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		
제조	또는	제조	또는	제조	또는		
판 매	업 무	판 매	업 무	판 매	업 무		
정지	3개월	정지	6개	정지	12개		
		월		월			
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	해당	품목
제조						제조	

버. 법 제18조제1항·제2항 에 따른 검사·질문·수 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 해한 경우	제1항제12	지 1개월 판매 또는 제 조 업 무	정지 3개 월 판매 또는	정지 6개 월	
서. 법 제19조, 제20조, 제 22조, 제23조제1항·제2 항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·검사명 령·개수명령·회수명령· 폐기명령 또는 공표명 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13		판매 또는 제조업무		등록취소
어. 법 제23조제3항에 따 른 회수계획을 보고하 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 고한 경우	제1항제13	제조업무	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3개 월	판매 또는 제조업무 정지 6개 월	등록취소
저.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 무를 한 경우로서	법 제24조 제1항제14 호				
1) 업무정지기간 중에 해당 업무를 한 경우 (광고 업무에 한정하 여 정지를 명한 경우 는 제외한다)		등록취소			
2) 광고의 업무정지기간 중에 광고 업무를 한 경우		시정명령	판 매 업 무 정지 3개 월		